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 ✓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 ✓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 ✓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 * 단,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술



혈압 상승제 투여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의학적 판단) + (본인의사 확인)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 (의학적 판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의사 2인의 판단
- ✓ (본인의사 확인 방법)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연명의료계획서, ③가족2인 진술, ④(환자의사 확인 불가 시) 가족 전원합의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한가요?

- ✓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검색 QR



연명의료계획서란?

-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 ✓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이며,
- ✓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 ✓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해서
- ✓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검색 QR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 ✓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 ✓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 ✓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 ✓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 www.lst.go.kr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문

1.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말합니다.

2.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목적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연명의료 결정제도 종류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구분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 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 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3.-① 창원권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055)233-8308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93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055)713-6890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63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1577-1000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6022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1577-1000	창원한마음병원	055)225-0800

3.- ②창원권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

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055)233-8309	창원파티마병원	055)270-1115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055)241-1237	희연요양병원	055)270-2525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055)280-0410	창원한마음병원	055)225-0703

4. 자세한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fmf>) 참조 해주세요.